

2.2 교수업적평가및지원에관한운영세칙

2007.9.7 제정

2007.10.23. 제 1차 개정

2008.02.05. 제 2차 개정

2014.01.07. 제 3차 개정

2020.09.01. 제 4차 개정

제 1조 (목적) 이 운영세칙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(이하 연구단)의 참여 교수의 실적 평가 및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실적 평가 항목) 참여교수의 실적은 연구단 평가시의 평가항목과 배점, 그리고 연구단에서 정한 연구단 운영 참여도 항목과 배점에 따라 평가한다.

제 3조 (실적기여도의 산출) 참여교수의 실적기여도(이하, '기여도')는 첨부 양식 “실적평가 및 선정평가 기준”에 의거한다.

제 4조 (기여도에 근거한 차등지원)

- ①성과급(인센티브)은 기여도가 상위 40%, 하위 30% 이내인 교수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- ②국제협력경비, 신진연구인력지원비, 대학원생지원비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.
- ③기여도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신규참여 교수의 경우 참여 당해연도에 한해 중간 등급의 지원을 한다.

제 5조 (규칙의 위반에 대한 제재) 연구단이 정한 학위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, 해당 교수의 지도학생에 대한 연구단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.

제 6조 (세부사항) 등급 및 등급 간 차등의 정도 등 세부사항은 “4단계두뇌한국(BK)21사업관리운영지침”과 가용자원 및 인센티브관련운영세칙을 고

려하여 매년 따로 정한다.

◁ 부 칙 ▷

- (1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7.09.07)로 부터 시행한다.
- (2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7.10.23)로 부터 시행한다.
- (3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08.02.05)로 부터 시행한다.
- (3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14.01.07)로 부터 시행한다.
- (4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(2020.09.01)로 부터 시행한다.